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8.26.(월)		
담당부서	공시심사실 특별심사팀	책임자	실 장	조치형	(02-3145-8420)
		담당자	부국장	봉진영	(02-3145-8431)

두산로보틱스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관련 설명

- □ 최근 언론 등에서 지난 7.24. 정정요구 이후 두산로보틱스의 증권 신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
 - o 금번 정정요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
- □ 자본시장법령상 **투자자 보호**를 위해 **증권**의 **모집 매출시**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,
 - o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중 **중요사항**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- □ (정정요구) 금융감독원은 '24.8.26. 두산로보틱스㈜(이하 '회사')의 분할 합병·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.
 - o 회사가 '24.8.16.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,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날부터 수리되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됩니다.
- □ (정정요구 배경) 지난 정정요구(7.24.)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검토 결과 ●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, ●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금융감독원의 **요구사항**에 대한 **보완이 미흡**한 부분을 **확인**하여

- 금번 **정정신고서 제출요구**를 통해 **주주들**의 **투자 판단**을 위한 **충분히** 제공되도록 **보와**을 **요구**하였습니다.
- 즉, 구조개편 관련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, 그간의 진행 과정, 거래시점 결정 경위,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,
- 2 분할신설부문(두산밥캣 지분 보유)의 수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현금흐름할인법,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에 발생하는 효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.
- □ 금융감독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시 동 **정정요구 사항**이 **충실히 반영**되었는지 **면밀히 심사**할 계획이며
 - 투자자께서는 금번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**증권신고서**의 **기재 내용**과 향후 **일정** 등을 **확인**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